



광 주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24574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

담당변호사 최준성

원고승계참가인, 항소인 겸 피항소인

국민연금공단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곽민섭

2. E

3. F병원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맥

담당변호사 차현영



제 1 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0가합53236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 15.
판 결 선 고 2025. 2. 5.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 1) 원고 A에게 10,000,000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6.부터 2022. 10.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머지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6.부터 2025.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2) 원고 B에게 215,363,142원 및 그중 177,865,288원에 대하여는 2017. 10. 6.부터 2022. 10.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머지 37,497,854원에 대하여는 2017. 10. 6.부터 2025.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3) 원고 C에게 219,479,922원 및 그중 181,189,752원에 대하여는 2017. 10. 6.부터 2022. 10.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머지 38,290,170원에 대하여는 2017. 10. 6.부터 2025.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4) 원고승계참가인에게 6,933,416원 및 그중,
가) 5,738,724원에 대하여는 피고 E, F병원은 2023. 3. 22.부터, 피고 D는 2023.



3.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나) 나머지 1,194,692원에 대하여는 피고 E, F병원은 2023. 3. 22.부터, 피고 D는 2023. 3. 23.부터 각 2025. 2. 5.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과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나.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306,912,475원, 원고 C에게 312,453,24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6.부터 2020. 3.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승계참가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9,904,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3. 3.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승계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참가취지 중 원금 부분을 확장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129,047,187원, 원고 C에게 131,263,49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6.부터 2020. 3.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승계참가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승계참가인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825,8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5.부터 2022. 10.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전제가 되는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쪽 6행 내지 9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원고승계참가인의 유족연금 지급

국민연금 가입자인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 B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2019. 3. 25.부터 2022. 10. 25.까지 원고 B에게 합계 9,904,880원을 유족연금으로 지급하였다.』

○ 제1심판결 제7쪽 10행의 “[인정 근거]”란에 “갑나 제14호증”을 추가한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¹⁾

1) 피고 E,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책임

가) 관련 법리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1)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는 피고 E, 피고 병원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피고 E, 피고 병원의 책임 인정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24. 선고 98다12270 판결 등 참조). 의사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의사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등 참조).

(2)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되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의사가 시술 전 환자의 상태 및 시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의 정도와 예방가능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면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261 판결 참조). 그리고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나) 주의의무 위반 여부



(1) 피고 E의 이 사건 삽입시술 과정에서의 과실(=긍정)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E은 이 사건 삽입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의사가 중심정맥관의 삽입 위치를 정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 방법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E 또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오른 속목정맥에 이 사건 삽입시술을 시도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삽입시술은 흔히 시행되는 시술이나, 기흉, 혈흉 등의 합병증이 보고되어 왔고, 특히 쇄골 아래 동맥의 천자로 인해 혈흉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시행하는 의사로서는 이러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중심정맥관 삽입 과정에서 주위 동맥을 건드리게 될 가능성은 1.9% 내지 15%로서 적지 않게 일어나는 부작용이라고 하나, 이 사건 의료사고와 같이 동맥이 약 1~2mm 크기로 관통되어 대량의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인다.

③ 중심정맥관 삽입 과정에서 발생한 동맥 천자는 보통 압박 등으로 지혈하여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의 경우 출혈량과 그 진행속도로 보았을 때 통상의 경우보다 동맥의 손상 정도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④ 오른 속목정맥은 오른 목의 안쪽에 있는데, 이 사건 관통상은 그보다 상당히 아래쪽에 있는 오른 쇄골 밑에 있는 동맥 부위에서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오른 쇄골 밑에 있는 동맥이 손상되는 것은 오른 속목정맥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는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망인에게 이 사건 삽입시술 과정에서 동맥 손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해부학적 이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은 찾을 수 없고, 달리 피고 E의 과실 이외에 이 사건 관통상을 발생시킬 만한 원인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피고 E은 이 사건 삽입시술을 시행하면서 실수로 이 사건 관통상을 야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충분하다.

(2) 이 사건 삽입시술 과정에서 초음파를 사용하지 않은 과실(=부정)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삽입시술을 할 때 중심정맥관 등이 속목정맥 안에 정확히 위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초음파를 사용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삽입시술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초음파를 함께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이 사건 삽입시술 과정에서 초음파 활용이 의학적으로 권고되었다거나 보편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주로 초음파 장비 없이 중심정맥관 삽입술이 시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N협회 O은 ‘초음파를 활용할 경우 이 사건 삽입시술 과정에서 주위 동맥 등을 건드리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으나, 초음파는 고가의 장비로서 충분히 갖추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2021. 8. 5.자 감정촉탁 회신), 망인에 대하여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



이 중심정맥관 삽입을 위해 반드시 초음파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더군다나 초음파를 이용하여 중심정맥관 삽입을 시행하더라도 바늘의 끝이 정확히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동맥 천자 등의 부작용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피고 E의 이 사건 삽입시술 시행을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부정)

원고들은, 피고 E이 이 사건 삽입시술을 시행할 정도로 숙련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고 병원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이 사건 삽입시술 과정에 입회하여 피고 E의 시술을 관리·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속목정맥에 대한 중심정맥관 삽입시술을 어느 정도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가 시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이는 통상적으로 전공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수준의 시술로 보인다.

② 피고 E은 이 사건 삽입시술 당시 마취통증의학과 1년차 전공의로서 수많은 마취 시술에 참여하면서 중심정맥관 삽입시술도 자주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시술에 부적절하거나 숙련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는바, 이 사건 삽입시술에 있어 반드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피고 E의 시술을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K 교수는 이 사건 삽입시술 초기에 입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E이 이 사건 삽입시술을 시행하던 중간에 다른 수술실로 이동하였으나, 언제든지 연락을 받으면 곧바로 수술실로 돌아올 수 있는 상태였다.

④ 피고 E이 이 사건 삽입시술을 할 당시 수술실에는 피고 E 외에도 2년차 전공의 I, 3년차 전공의 J가 피고 E의 시술을 지켜보고 있었고, I은 피고 E이 망인의 속목정맥을 제대로 찾지 못하자 이를 바로잡아 주기도 하였다. J는 이 사건 삽입시술 도중에 다른 수술실로 이동하였다가 돌아와 망인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K 교수에게 상황을 보고하였으며, K 교수가 수술실에 도착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숙련된 의사의 지휘·감독 없이 피고 E에게 전적으로 이 사건 삽입시술을 맡긴 채 방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관통상 발생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의 조치상 과실(=부정)

원고들은, 이 사건 관통상 발생 이후 피고 E을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혈압 급감 등의 원인을 짐작하지 못한 채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였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의 도착이 늦어져 지혈, 승압제 투여,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되었으며, 수혈에 필요한 혈액도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방사선촬영사가 수술실 내에 없어 흉부촬영이 늦어지는 등 후속 조치가 제때에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 E이 이 사건 삽입시술을 시행하여 실패한 후 2년차 전공의 I이 다시



이 사건 삽입시술을 시도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망인에게 이상 징후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곧바로 이 사건 관통상이나 이로 인한 내부 출혈을 의심하지 못한 채 다시 이 사건 삽입시술을 시도하였다고 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들은, 망인의 혈압이 하강한 10:50부터부터 11:20까지 피고 의료진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N협회 O은 ‘도관 후 11:10~11:15) 망인의 혈압이 심하게 떨어졌다’고 하였고(2021. 8. 5.자 회신 8쪽), ‘망인의 혈압이 10:50경 떨어진 원인은 마취 유도과 유지시 사용된 약제(프로포폴)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동맥 천자에 의하여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명확한 시점을 알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는바(2024. 11. 7.자 회신), 피고 병원 의료진이 10:50부터 즉시 망인의 동맥 손상을 전제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피고 E과 I은 J가 수술실로 돌아올 무렵까지 이 사건 삽입시술을 시도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망인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③ J는 11:15경 수술실로 돌아와 망인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태를 확인한 후 수액 및 승압제를 투여하고, K 교수를 호출하였다. K 교수가 도착한 후 11:22 무렵 망인에 대하여 가슴 압박이 이루어졌고, 11:29 무렵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 혈흉이 확인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11:33경 흉부외과 전문의를 호출하고 수혈을 시작하였다. 원고들은 흉부방사선 촬영이 12:00경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고, 흉부외과 전문의 호출 및 도착도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의무기록상 명확한 흉부방사선 촬영 시간을 알 수 없는 점(2024. 11. 7.자 회신), N협회 O은 ‘11:50에 흉부외과 의사가 대처를 시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소요 시간은 적절했다’는 의견을 밝힌 점, 의사기록지에 따르면 11:25에 혈액 주문이 이루어졌고, 11:45에 혈액이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 점(2021. 12.



13.자 상임전문심리위원 의견서) 등에 비추어 보면, 흉부방사선 촬영에 따른 혈흉의 확인과 흉부외과 전문의의 조치는 11:50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④ 망인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때부터 혈흉을 확인할 때까지 약 30~40분의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삽입시술로 인하여 대량 출혈이 발생하는 일은 매우 드물고, 망인은 외상에 의해 머리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다른 부위(복부) 등의 출혈도 의심해야 했으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한 과정도 필요했던 점(2021. 8. 5.자 회신), 흉부방사선 촬영을 위해 촬영기를 가져 오고 결과를 관독하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관통상을 제때에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흉을 확인하고 곧바로 흉부외과 전문의를 호출한 후 수혈을 시작하였고, 흉부외과 전문의가 도착하여 흉강경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다량의 피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자 가슴절개술을 진행하여 압박지혈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당시의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삽입시술은 망인에 대한 응급수술을 위해 시행되고 있었고, 망인에 대한 수술이 대량 출혈이 예상되는 수술로 반드시 수혈에 필요한 혈액과 방사선촬영기사를 확보한 채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설명의무 위반(=긍정)

이 사건 삽입시술은 속목정맥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는 시술로서 이를 시행하는 과정이나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삽입시술을 시행하기 전에 망인이나 보호자에게 그 시술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그 시술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E이 원고들에게 ‘망인에 대한 전신마취의 방법으로 혈관으로 마취제가 주사되며 안전한 수술을 위해 동맥 및 정맥에 니들을 삽입할 수 있다’는 등의 설명을 하고, 원고 B으로부터 마취동의서를 작성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마취동의서에는 ‘마취 과정에서 이 사건 삽입시술이 있고, 그로 인해 주위 동맥에 천자가 발생하는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치명적일 경우 환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외에 피고 E, 피고 병원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삽입시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삽입시술에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망인이나 보호자가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삽입시술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설명의무 위반의 점은 원고들이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는 사유로만 참작한다.

다) 인과관계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부검 결과 망인의 사망 원인은 이 사건 관통상으로 인해 발생한 대량 실혈 때문으로 밝혀진 점, ② 이 사건 관통상은 이 사건 삽입시술 과정에서 그 시술에 사용되는 기구(천자용 바늘, 가이드 와이어, 카테터, 확장기 등) 중 하나가 망인의 오른 빗장밑동맥을 찔러 발생한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삽입시술 이전에 정상적인 활력 징후를 보였고, 기타 특수체질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E이 이 사건 삽입시술을 잘못 시행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라) 소결론

피고 E은 이 사건 삽입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병원은 피고 E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

가) 관련 법리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최초의 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최초의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D는 망인을 폭행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는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D는 불법행위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 D는 망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장실에서 망인을 밀어 세면대 측면에 설치된 스테인리스 재질의 수건걸이에 머리 뒷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망인은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② 망인은 처음 이송된 H병원에서 뇌 CT촬영을 한 결과 경막외출혈의 양이 증가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확인되어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그리고 피고 병원에서 다시 뇌 CT촬영을 한 결과 출혈량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의료진은 두개골을 절제하여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망인은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③ 이처럼 피고 D의 폭행치상 행위로 말미암아 망인은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 이었고,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 과정에서 이 사건 삽입시술이 함께 행하여졌는데, 이 사건 삽입시술 과정에서 피고 E의 의료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④ 비록 피고 E의 의료상 과실이 망인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이 되었으나, 피고 D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E의 위와 같은 과실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등의 인과관계를 단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들의 각 손해배상책임의 관계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되며,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판결 등 참조).

피고 D의 폭행치상 행위로 말미암아 같은 날 피고 병원에서 망인에 대한 수술 및 이 사건 삽입시술이 행하여지게 되었으므로, 피고 D의 폭행치상 불법행위와 피고 E



의 의료과오 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피고 D와 피고 E은 망인이 사망한 결과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고, 피고 병원은 피고 E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가) 관련 법리

(1)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손해 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등 참조), 의사 등이 치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의사 측 과실의 내용과 정도, 진료의 경위와 난이도, 의료행위의 결과, 해당 질환의 특성, 환자의 체질과 행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 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8332 판결 등 참조).

(2)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에서 손해분담의 공평을 위해 각 가해자들의 책임



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선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피고 D와 피고 E, 피고 병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망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피고 E, 피고 병원에게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추후 어느 일방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구상관계에서 따질 문제이다).

① 피고 D의 폭행치상으로 말미암아 망인은 경막외출혈 등으로 두개골을 절개하여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하였고, 비록 그 수술의 성공률이 99%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수술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수술 과정에서의 부작용 또는 합병증 등으로 망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②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흔히 시행되는 시술이나, 기흉, 혈흉 등의 합병증이 보고되고 있고, 특히 쇄골 아래 동맥의 손상으로 인해 혈흉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위험이 있는 부위에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시행하는 의료진으로서의 보다 신중하게 시술할 주의의무가 있다.

③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시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위 동맥의 손상이 1.9% 내지 15% 비율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의료사고와 같이 동맥이 약 1~2mm 크기로 관통되어 대량의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삽입시술을 시행한 피고 E의 과실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④ 이 사건 관통상이 발생함에 있어 피고 E의 과실 이외에 망인의 해부학적



이상 등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사정은 찾을 수 없다.

⑤ 다만, 이 사건 삽입시술은 망인에 대한 수술을 위해 필요한 시술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초음파 등 다른 장치를 활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맥 손상의 위험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 E이 이 사건 삽입시술에 적절하지 않은 기구를 사용하였다거나 현저히 잘못된 절차 및 방식으로 시술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삽입시술 과정에서 상위 연차 전공의들 및 전문의가 피고 E의 시술을 지휘·감독한 방식 역시 진료환경 및 조건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⑦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것을 확인한 이후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산출 근거, 계산 내역과 그 액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하고, 월 미만 일수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으로 하며, 손해액의 망인의 사망 당시(2017. 10. 6.)로의 현가 계산은 월 5/12분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이른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르기로 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입

가) 생년월일 및 성별: M 생, 여자

나) 사망일: 2017. 10. 6. (사망 당시 연령: 31세 3개월 11일)



다) 기대여명 및 여명 종료일: 55.23년, 2072. 12. 14.

라) 가동연한 및 가동 종료일: 65세, 2051. 6. 24.

마) 소득기준: 보통인부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망인은 2013. 6. 30. 무렵부터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였으므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바) 일실수입의 계산: 합계 553,421,461원(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2) 기왕치료비

망인이 사망할 당시까지 지출한 치료비는 합계 2,235,460원이고, 이는 망인이 부담한 것으로 본다.

3) 장례비

원고 B은 망인의 장례비로 4,023,767원을 지출하였다.

4) 유족연금의 공제 방법

가)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의 상속 후 공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수



급권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나) 공제 후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먼저 연금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 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며, 나머지 금액(연금급여액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연금급여 지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 책임의 제한 및 상속관계

가) 책임비율: 70%

나)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부분

망인의 일실수입액은 553,421,461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부모로서 위 일실수입액 중 각 276,710,730원(=553,421,461원×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한다.

그런데 피고들의 책임은 70%로 제한되고, 원고 B은 원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 유족연금 합계 9,904,88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앞서 본 유족연금 공제 방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계산하면, 원고 B, C의 각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상속액은 다음과



같다.

○ 원고 B: 186,764,095원[=(276,710,730원-유족연금 9,904,880원)×70%]

○ 원고 C: 193,697,511원(=276,710,730원×70%)

다) 망인의 기왕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부분

망인의 기왕치료비는 2,235,460원이고, 여기에 피고들의 책임비율 70%를 적용하면 1,564,822원(=2,235,460원×70%)이 된다. 원고 B, C은 망인의 부모로서 위 금액 중 각 782,411원(=1,564,822원×1/2)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한다.

라) 원고 B의 장례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부분

원고 B이 지출한 장례비는 4,023,767원이고, 여기에 피고들의 책임비율 70%를 적용하면 2,816,636원(=4,023,767원×70%)이 된다.

6) 원고들의 위자료

가) 참작한 사유: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원고들이 망인의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나) 결정금액

(1) 원고 B, C: 각 2,500만 원

(2) 원고 A: 1,000만 원

7) 원고들의 각 손해배상채권액

가) 원고 B: 215,363,142원[=상속한 일실수입 186,764,095원+상속한 재산상 손해 782,411원+장례비 2,816,636원+고유 위자료 25,000,000원].

나) 원고 C: 219,479,922원[=상속한 일실수입 193,697,511원+상속한 재산상 손해



782,411원+고유 위자료 25,000,000원]

다) 원고 A: 10,000,000원(고유 위자료)

8)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215,363,142원, 원고 C에게 219,479,922원 및 위 각 돈 중 제1심판결에서 받아들인 별지 목록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들의 각 불법행위일인 2017. 10. 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0.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②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별지 목록 ‘당심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들의 불법행위일인 2017. 10. 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승계참가인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피해자를 대위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 B에게 2019. 3. 25.부터 2022. 10. 25.까지 합계 9,904,880원을 유족연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 B에게 지급한 유족연금의 액수에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곱한 6,933,416원(=9,904,880원×70%)에 대하여 원고 B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6,933,416원 및 그중 제1심판결에서 받아들인 5,738,724원에 대하여는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E, F병원은 이 사건 2023. 3.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3. 22.부터, 피고 D는 이 사건 2023. 3.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3.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1,194,692원에 대하여는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E, F병원은 이 사건 2023. 3.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3. 22.부터, 피고 D는 이 사건 2023. 3.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3. 23.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과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13

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한

 판사 김경준

 판사 김수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13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

사건번호	2022나24574		건명	손해배상(자)
성명			유형	사망
성별(남1,여2)	여	사고시 연령	31세 3개월 11일	
생년월일		기대여명	55.23	
사고 발생일	2017-10-06	어명 종료일	2072-12-14	
가동연한(세)	65	가동 종료일	2051-6-24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7-10-06	2018-4-30	109,819	22	2,416,018	1/3	6	5,914	0	0	6	5,914	9,525,553
2	2018-5-01	2018-8-31	118,130	22	2,598,860	1/3	10	9,7773	6	5,914	4	3,8633	6,693,450
3	2018-9-01	2019-4-30	125,427	22	2,759,394	1/3	18	17,3221	10	9,7773	8	7,5448	13,879,383
4	2019-5-01	2019-8-31	130,264	22	2,865,808	1/3	22	21,0074	18	17,3221	4	3,6853	7,040,908
5	2019-9-01	2020-4-30	138,290	22	3,042,380	1/3	30	28,2124	22	21,0074	8	7,205	14,613,565
6	2020-5-01	2020-8-31	138,989	22	3,057,758	1/3	34	31,7354	30	28,2124	4	3,523	7,181,654
7	2020-9-01	2021-4-30	141,096	22	3,104,112	1/3	42	38,6299	34	31,7354	8	6,8945	14,267,533
8	2021-5-01	2021-8-31	144,481	22	3,178,582	1/3	46	42,0043	42	38,6299	4	3,3744	7,150,538
9	2021-9-01	2022-4-30	148,510	22	3,267,220	1/3	54	48,614	46	42,0043	8	6,6097	14,396,896
10	2022-5-01	2022-8-31	153,671	22	3,380,762	1/3	58	51,8519	54	48,614	4	3,2379	7,297,712
11	2022-9-01	2023-4-30	157,068	22	3,455,496	1/3	66	58,1993	58	51,8519	8	6,3474	14,622,276
12	2023-5-01	2023-8-31	161,858	22	3,560,876	1/3	70	61,3112	66	58,1993	4	3,1119	7,387,393
13	2023-9-01	2024-4-30	165,545	22	3,641,990	1/3	78	67,4164	70	61,3112	8	6,1052	14,823,384
14	2024-5-01	2051-6-24	167,081	22	3,675,782	1/3	404	236,5809	78	67,4164	326	169,1645	414,541,216
												일실수입 합계액(원)	553,421,461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13

별지

목 록

원고		청구금액	제1심 인용금액 (㉠)	항소심 인용금액 (㉡)	당심 추가 인용금액 (㉢=㉡-㉠)
순번	성명				
1	A	20,000,000	5,000,000	10,000,000	5,000,000
2	B	306,912,475	177,865,288	215,363,142	37,497,854
3	C	312,453,248	181,189,752	219,479,922	38,290,170

끝.